

**2007년도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청요강**  
(박사후국외연수, 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2007. 4.**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주요사항 요약 및 신규대비표

구분	2006년	2007년	비고
지원 예산	○ 9,220백만원	○ 9,220백만원	
지원 분야	○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 국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재비 : 연 3만불 이내</li> <li>- 항공료 : 재단 방침에 의거 지급</li> </ul> </li> <li>○ 박사후 국내연수 : 연 2,7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 연 2,400만원</li> <li>▪ 연구기관지원금 : 연 100만원</li> <li>▪ 보험부담금 외 : 연 200만원</li> </ul> </li> <li>○ 학술연구교수 : 연 3,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활동비 : 연 2,400만원</li> <li>▪ 연구비 : 연 600만원</li> <li>▪ 연구기관지원금 : 연 400만원</li> <li>▪ 보험부담금 외 : 연 20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 국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지원비: A, B, C 지역으로 구분 지급                    A지역 25,000천원                    B지역 23,000천원                    C지역 20,000천원</li> </ul> </li> <li>○ 박사후 국내연수 : 연 2,7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 연 2,400만원</li> <li>▪ 연구기관지원금 : 연 100만원</li> <li>▪ 보험부담금 외 : 연 200만원</li> </ul> </li> <li>○ 학술연구교수 : 연 3,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 연 2,400만원</li> <li>▪ 연구비 : 연 600만원</li> <li>▪ 연구기관지원금 : 연 300만원</li> <li>▪ 보험부담금 외 : 연 300만원</li> </ul> </li> </ul>	
지원 대상	<p>&lt;박사후 연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경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1.1 이후 취득자</li> <li>- 2006년도 박사학위취득 예정자 포함</li> </ul> </li> </ul> <p>※전일제 취업자 지원 제외 예고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제외</p>	<p>&lt;박사후 연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경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1.1 이후 취득자</li> <li>- 2007년도 박사학위취득 예정자 포함</li> </ul> </li> </ul> <p>※ 전일제 취업자 지원 제외            ※ 좌동</p>	

구분	2006년	2007년	비고
연수 개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 국외연수 : 9. 1</li> <li>○ 박사후 국내연수 : 9. 1</li> <li>○ 학술연구교수 : 9.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 국외연수 : <b>8. 1</b></li> <li>○ 박사후 국내연수 : 9. 1</li> <li>○ 학술연구 교수 : 9. 1</li> </ul>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연수 : 1년</li> <li>○ 학술연구교수 : 3년 계약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연수 : 1년</li> <li>○ 학술연구교수 : <b>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연 단위 계약 체결 가능</b></li> </ul>	
심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 패널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3단계 : <b>전문가 집중심사 (온라인전문심사+패널집중심사)</b></li> </ul>	
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연수</li> <li>- BK21사업 등 타 사업의 박사후연수과정자(계약교수 포함)로 참여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연수</li> <li>- BK21사업 등 타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후 선정될 시 이중 수혜 불가</li> </ul>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교수 추천순위 부여</li> <li>○ 학술연구교수 추천인원 : 5명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교수 - 추천순위 부여 <b>해제</b></li> <li>○ 학술연구교수 추천인원 : <b>3명 이내</b></li> </ul>	

# 차 례

<b>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b>	<b>1</b>
1. 사업목적 .....	1
2. 지원방향 .....	1
<b>II. 사업내용 .....</b>	<b>1</b>
1. 지원대상 및 분야 .....	1
2. 지원예산 .....	2
3. 지원규모 및 기간 .....	2
4. 학술연구교수 선정자의 지위 .....	3
<b>III. 신청 .....</b>	<b>4</b>
1. 신청자격 .....	4
2. 신청기간 .....	4
3. 신청방법 .....	4
4. 온라인 신청절차 .....	4
5. 신청 및 참여 제한 .....	9
<b>IV. 심사 및 선정 .....</b>	<b>11</b>
1. 심사절차 .....	11
2. 심사방법 및 내용 .....	11
<b>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b>	<b>13</b>
1. 연구비 지급 .....	13
2. 연구비 관리 .....	14
<b>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b>	<b>14</b>
1. 연구진행 상황보고서 제출 및 점검 .....	14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5
3. 연구비 사후관리 .....	17
<b>VII. 간접연구비 지원 .....</b>	<b>19</b>
<b>VIII. 기타사항 .....</b>	<b>19</b>

- 붙임 1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 2 연구계획서 양식

#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 1. 사업목적

-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질적 연구능력 향상 유도
-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가 대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문연구인력 양성 도모 및 대학연구소의 활성화 유도

## 2. 지원방향

-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 여성연구자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신청자 우대
- 국외 연수지역의 다변화 추진(미국, 캐나다외 지역 신청자 우대)

# II.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및 분야

가.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나. 지원대상

박사후국외연수	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2. 1. 1. 이후취득)</li> <li>○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li>※ 2007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신청가능</li> <li>※ 전일제 취업자 지원 제외</li> <li>※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제외</li> <li>※ 기 수혜자 신청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2. 1. 1. 이후취득)</li> <li>○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li>※ 2007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신청가능</li> <li>※ 전일제 취업자 지원 제외</li> <li>※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제외</li> <li>※ 기 수혜자 신청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학)장이 3년 계획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단, 현재 취업중인 자는 연수개시와 동시에 퇴직하여야 함</li> <li>○ 기 수혜자 신청 가능 (총 2회 까지 수혜가능)</li> </ul>

※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자는 연수개시와 동시에 퇴직을 하여야 하고 연수개시(출국 포함)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다. 연수기관

- 박사후국외연수 기관은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함
- 박사후국내연수 기관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함
  - ※ 박사후국내연수 기관은 신청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과 다른 대학(기관)이어야 함
- 학술연구교수연수 기관은 국내 모든 대학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함
  - ※ 학술연구교수 연수기관은 신청자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 취득대학과 무관함

## 2. 지원예산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인문사회분야		기초과학분야		합 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박사후국외연수(신규)	645	30	9,000	400	9,645	430
박사후국내연수(신규)	1,305	43	2,430	81	3,735	124
학술연구교수 (신규)	1,930	53	1,412	39	3,342	92
학술연구교수 (계속)	5,340	166	3,558	105	8,898	271
총 계	9,220	292	16,400	625	25,620	917

## 3. 지원규모 및 기간

### 가. 지원규모

박사후 국외연수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으로 구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지역: 2,500만원</li> <li>- B지역: 2,300만원</li> <li>- C지역: 2,000만원</li> </ul> </li> <li>※ 항공료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활동비(인건비): 2,400만원</li> <li>○ 연수기관지원금: 100만원</li> <li>○ 보험부담금 등 : 2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활동비(인건비): 2,400만원</li> <li>○ 연구비: 600만원</li> <li>○ 연수기관지원금: 300만원 (퇴직금 포함)</li> <li>○ 보험부담금 등 : 300만원</li> </ul>
	1인당 연 2,700만원	1인당 연 3,600만원

※ 박사후국외연수 지원비 지역별 구분 (\*지원비는 체재비와 항공료를 통합하여 정함)

- A지역: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네델란드,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이태리, 프랑스,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 B지역: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싱가포르 등
- C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필리핀 등

※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에 있어 외국 연수기관 지원금이 재단 지원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2 을 재단 지원비에서 공제한 후 지급 함

## 나. 연수 기간

박사후국외연수	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예시: 07. 8. 1 -08.7.31(1년)	07. 9. 1- 08. 8.31(1년)	07. 9. 1-10. 8.31(3년)

※ 박사후국외연수 출국일은 '07. 8. 1부터 '07. 12. 31까지이며, 연수개시일은 출국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로 한다.(예, 출국일 07.8.19 경우 연수개시일은 07.9.1로 함)

※ 07. 1. 1 이후 조기출국한 선정자의 연수개시일은 2007. 8. 1로 한다.(예, 출국일 07.2.5 경우 연수개시일은 07.8.1로 함)

## 다. 추천인원

- 박사후 국내·외 연수 : 기관추천 인원수 제한 없음
- 학술연구교수 : 1개 대학당 6명 이내(인문사회분야 3명, 기초과학분야 3명)

## 4. 학술연구교수 선정자의 지위

### 가. 지위

- 본 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자를 학술연구교수(MOEHRD-KRF Research Professor)라 함.
- 대학은 연구교수의 사무실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3년간 지원을 원칙(연단위로 계약)으로 대학부설연구소 '전임 연구교수'로 채용함.
- 연구기관은 전임 연구교수에게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나. 역할 및 활용

- 학술연구교수는 연구를 위주로 하되 강좌 개설에 관한 것은 소속기관의 운영 계획에 따라 활용 가능함. 단, 소속기관 강의시 1강좌를 초과하는 경우 강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타교 강의는 1강좌 이내로 제한함.

### III. 신청

#### 1. 신청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2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 박사후 연수: 1편 이상인 연구자

- 학술연구교수: 인문사회분야 2편, 기초과학분야 3편 이상인 연구자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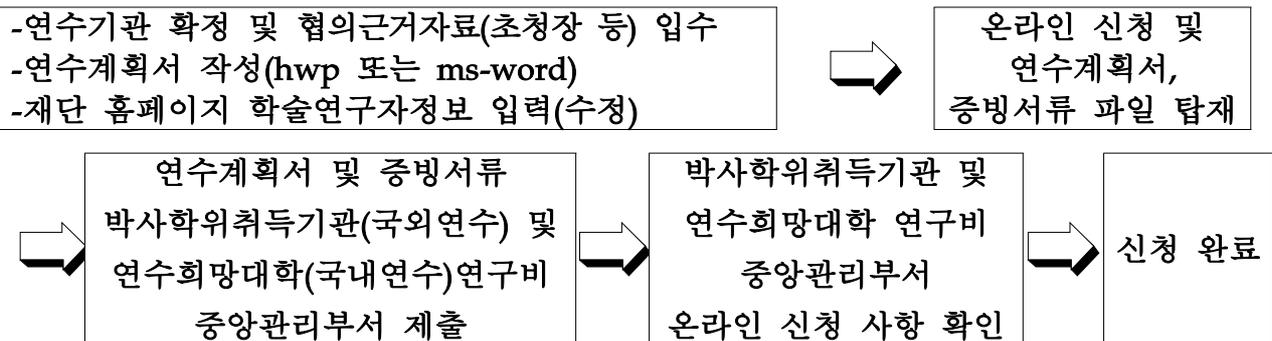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지원 신청시 온라인 입력하여야 함

2. 신청기간 : **2007. 4. 30(월) 09:00 ~ 5. 9(수) 18:00** 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www.krf.or.kr](http://www.krf.or.kr)에 접속하여 신청)

#### 4. 온라인 신청절차

가. 박사후 국외연수 및 박사후 국내연수



##### 1) 온라인 신청 전

- 국외연수 신청자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대학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해 신청가능 여부(학위취득 관련 사항)를 사전 확인하고, 연수기관 확정 및 협의근거자료(초청장, 연구계획 관련 교환서신 등)를 입수(e-mail 포함, 온라인 신청시에 「호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탑재함)하여야 함.

※ 예비선정자는 확정된 협의근거의 초청장 등을 제출해야 함(확정된 연수기관 지원금, 편의내용, 연구내용 등 포함)

- 국내연수 신청자는 연수희망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선정시 연구비중앙관리와 **4대보험 의무적가입 조건임을 사전 협의**를 해야 함
-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연락처 등)를 입력, 수정함. 단, **현 소속에 있어 국외연수 예정자중 무소속의 경우는 국내 박사학위취득 대학으로, 국내연수 예정자는 국내연수 예정기관으로 하여야함.**

※ 온라인 신청 중이나 이후에 수정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반드시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입력한 연구업적 등은 심사시에 고려사항이 됨

- 온라인 신청시 연수계획서(양식은 붙임 참조)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호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 2) 온라인 신청

- 연수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수계획서,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증빙서류(국외연수에만 해당됨)**” 파일을 탑재, 신청 완료.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접수번호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표업적은 “**Ⅲ-1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1편만 선택함(2편 이상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은 반드시 하나의 파일(「**호글**」, 「MS워드」, 「PDF」)로 탑재하되 위의 순서대로 편집하여야 함

- 증빙서류 파일 탑재방법 : 초청장 또는 연수계획 관련 교환서신(E-mail 포함, 모든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첨부)은 반드시 「**호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탑재함 (**jpg파일 등 제외**)

○ 파일탑재시 유의사항

- 탑재된 증빙서류 파일은 “조회”버튼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 확인할 수 있음.  
※ 단, “증빙서류 보기”로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회” 버튼으로도 확인할 수 없음
- 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파일은 탑재하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한 면에 2쪽 이상 보이게 되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파일 탑재 이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1쪽만 보이는지 확인 한 후 탑재하여야 함

가)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연수자가 입력한 신청내용, 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파일의 수정·교체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교체할 수 없음  
※ 수정·교체한 후에는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함 (클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입력사항을 입력 완료하지 않거나 연수계획서를 탑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박사후 국외연수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시 국외 연수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FAQ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온라인 신청 후

가) 연수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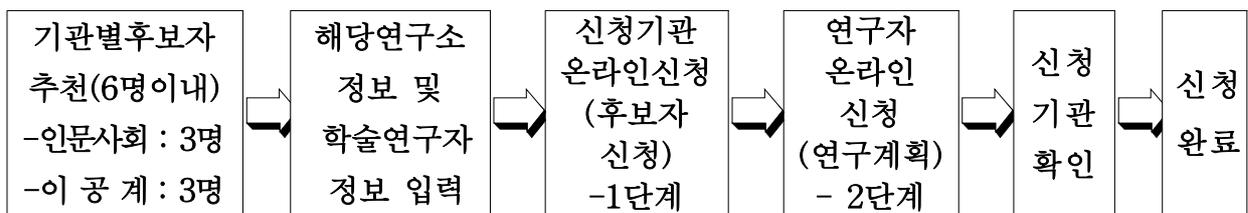
- **박사후 국외연수자:**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아래 서류 각 1부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박사학위 취득(예정)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재단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 **박사후 국내연수자:**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아래 서류 각 1부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연수대학(연수예정대학)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재단에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적임**)

- 제출서류
  - 온라인 입력 내용 (온라인 신청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 연수계획서 (연수계획서, 대표연구업적요약문, 박사학위논문요약문)
  - 박사학위 취득 학위기 사본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서면 준비된 자료)
  - 연수기관의 학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국내연수에 한하여 서면 준비된 자료)
- ※ 추천자는 연수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수개시에 인건비 이중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하여야 함
- 국외연수에 경우 외국기관 지도 교수 초청장 또는 연구계획 관련 교환서신이나 e-mail로 협의한 내용

## 나) 연수기관

- 온라인신청 기관확인 : 2007. 5. 10(목) 09:00 ~ 5. 11(금) 18:00까지
-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수자의 신청자격(박사학위 취득(예정)여부, 대학 전임교수·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여부 및 타사업 참여 등) 부합여부, 온라인 신청여부 등을 연수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상기 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연수자로부터 제출 받은 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 (단, 재단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함)

## 나. 학술연구교수



### 1) 온라인 신청 전

- 신청기관 : 재단 홈페이지 '정보등록' → '대학부설연구소등록' 코너에서 해당 연구소 현황을 최신자료로 수정·입력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도중이나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여도 업적 등이 반영되지 않음. (동 연구소 현황 자료도 심사시 활용될 수 있음)
-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양식1) 및 총(학)장 추천서(양식2) 입수

- ※ 학술연구교수활용계획서는 신청자 1인당 1부씩 작성하여야 함.  
신청기관(대학교)과 연구소에서 연구소 성격 및 연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작성
- 기관 : 공간확보, 강의배정, 임용, 규정관련, 연구비 관리, 각종 시  
설이용, 인력활용계획 등
- 연구소 : 학술연구교수 필요성, 연구참여, 강의, 연구공간 등
-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등록」 코너에서  
본인의 정보를 해당대학 대학부설연구소 소속으로 하여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 뒤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온  
라인 신청 도중이나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여도 업  
적 등이 반영되지 않음.

## 2) 온라인 신청

### 가) 신청기관

- 신청기관은 학술연구교수 신청자를 추천한 후, 해당 기간 내 재단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일괄 온라인 신청
- 신청기관의 로그인 : 연구비 중앙관리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
- 신청기관은 1단계 종료 후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2단계 온라인 신청토  
록 안내할 것
- ※ 기 입수한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 및 총(학)장 추천서는 연구자에게 전달

### 나) 신청자

- 1단계 종료 후 신청자 개인별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 온라인신청 시 붙임3 자료(양식1~5)를 파일 탑재
- ※ 「**한글**」, 「MS워드」, 「PDF」 파일만 탑재 가능(두 프로그램을 혼합  
하여 작성한 파일도 탑재 불가능)
- 대표업적 선택시 2002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발  
표된 본인의 연구업적 중 가장 우수한 업적을 인문, 사회, 예술·체육  
학 분야 연구자는 2편, 자연분야 연구자는 3편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  
한 연구업적의 요약문(초록)을 연구계획서(양식3) 안에 기재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업적과 연구계획서 안의 업적이 일치하여야 함)
- 분야의 특성상,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A&HCI급, SSCI급, 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계획서(양식3) 안에 기재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 2007년도 학술연구교수 연구비산정·집행기준표(붙임1)을 참조하여 연구비(직접비) 600만원에 대한 예산 수립 후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단위에 주의). 온라인 입력 내용만 인정하며, 연구계획서 파일 안에 기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3) 온라인 신청 후

#### 가)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관련서류(온라인 입력내용 출력본, 붙임3 자료(양식1~5))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 나)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자 소속기관의 중앙관리 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관련서류(온라인 입력내용 출력본, 붙임3 자료(양식1~5)) 1부를 제출받아,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만일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신청 기관 확인 : 2007. 5. 10(목) 09:00 ~ 5. 11(금) 18:00까지**
-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신청내용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 5. 신청 및 참여제한

### 가. 신청제한

- **본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박사후 국내연수의 경우 박사학위취득기관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박사후 국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음
- 본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중 박사후연수지원과 학술연구교수에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없음
- BK21사업 등 타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추후 선정될 시 이중수혜 불가**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보고서 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나. 참여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박사후연수과정,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의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1과제에 해당함).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또는 박사급연구원)으로 동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초연구과제 선정 시 반드시 기초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8.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이공계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과제, 우수논문사후지원과제, 우수학자지원(국가석학) 과제, 학술성과혁신지원의 WISE 프로그램 지원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박사후 국외연수의 경우 국내에서 시행하는 타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또는 연수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는 연수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되어야만 국외연수 수행이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12.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지급은 중지하고 신규지원 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기간에 저촉 되는 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 IV. 심사 및 선정

### 1. 심사절차

단계별	구 분	심 사 내 용	비고
1 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 단계			
4 단계	종합심사	선정과제 확정	종합심사단

### 2. 심사방법 및 내용

#### 1) 제 1 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 2) 제 2,3 단계 심사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전문가 집중심사(온라인전문심사 + 패널집중심사)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 ※ 박사후 국외·내 연수지원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연수자 부분 (35)	연수자의 우수성 (35)	연수과제의 부합성 (12)	신청자의 학력·경력과 연수과제가 부합하는가
		연수자의 연구수행 능력 (12)	신청자의 최근 5년간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수목표의 달성 가능성 (11)	연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연수 과제 부분 (40)	연수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40)	지원의 필요성 (20)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이며 연수의 필요성이 있는가
		연수성과의 기여도 (10)	해당 분야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연수계획의 타당성 (5)	전반적으로 연수계획이 타당한가
		연수과제의 우수성 (5)	연수과제가 국가에서 지원할 만큼 우수한 과제인가
연수 기관 부분 (25)	연수기관 의 적합성 및 우수성 (25)	연수기관의 적합성 (15)	연수기관이 연수를 수행할 만큼 우수한 지식을 보유한 기관인가 (국내·외 연수) 연수기관은 연수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 는가 (국외연수)
		상호협력 및 발전가능성(5)	연수완료 후 지속적인 협력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지식전수 가능성 (5)	연수기관은 연수자가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을 전수하는가

※ 학술연구교수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연구주제 (50)	독창성 (30)	연구주제의 창의성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구방법의 창의성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 및 학문의 균형발전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 소외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학문적 파급효과 및 교육과의 연관성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연구내용 및 실행가능성 (40)	연구내용 및 방법 (20)	연구내용의 필요 충분성	○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적절성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선행연구 (5)	연구역량 (15)	연구능력 및 연구실적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선행연구의 검토(인용 및 참고문헌)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인용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기관활용계 획서 평가 (10)	대학의 육성의지 (10)	활용계획서의 구체성	○ 학술연구교수 지원에 대한 연구인력 활용계획은 적절한가	
			○ 학술연구교수 지원의 필요성이 적절한가	

※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3) 제 4 단계 심사 : 종합심사

○ 심사내용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정책적 고려 10% 지원방안 포함)

**3. 선정확정 및 협약 체결**

- 1) 예비선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 2)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3) 협약체결 : 재단(이사장), 연구자, 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단, 박사후국외연수 경우는 재단(이사장), 연수자, 2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시기 및 방법

1) 박사후 국외연수

- 협약서 체결 후 재단 방침에 따라 연수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함

2) 박사후 국내연수 및 학술연구교수

- 협약서 체결 후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하고, 연수기관은 연구자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나. 연구비 사용

- 박사후국내연수 및 학술연구교수의 경우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과제별 협약체결 후 연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협약 체결 후 연수자 개인이 집행함.

## 2. 연구비 관리

- 박사후 국내연수(학술연구교수 포함) : 지원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 박사후 국외연수의 경우 : 연수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 연구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및 점검

#### 가. 박사후 국외연수(개인별 온라인 제출)

- 1) 연수착수보고서 : 연수 착수일 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2) 연수진행상황(중간)보고서 : 연수 개시일로 부터 5-7개월 제출

#### 나. 박사후 국내연수

- 1) 월별 연수지도확인서 : 해당기관 연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매월 연수지도교수의 월별 연수지도확인서를 접수함

#### 다. 학술연구교수

- 1)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 연차별 당해연도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
  - ※ 2차 연차보고 시 전문학술지게재(예정) 논문 1편을 제출하여야 함.
  - 학술지 게재논문 미제출 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지원 중단시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
- 3)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함(국외연수제외)
    - 연구요약문(국·영문)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파일탑재
    - 연구결과보고서(재단 소정양식)
    - 연수지도교수의견서 1부(박사후 국외연수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박사후 국외연수에 한함)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4)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 나.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 1)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에 대한 책무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급·SSCI급·SCI&SCIE급) 학술지)에 1년 연구는 1편, 다년 연구는 해당년수 X 1편 이상 게재하거나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2)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
- 3)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7-○○○-○○○○○○○).”
- 4) 연구결과 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 다. 연구결과 사후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논문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과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소유로 함
-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
  -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주관기관이 상기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함

## 3. 연구비 사후관리

### 가. 박사후 국외연수 사후관리

#### 1) 연수중단 등에 대한 사항

- 연수자가 연수도중 연수를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연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고, 그 시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일시 및 조기귀국허용일수 산정기준일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일수는 다음과 같다.

※ 1개월 ~ 6개월 : 7일 / 7개월 ~ 12개월 : 15일

#### 2) 국외연수자의 출국기한은 관리지침의 원칙에 따르되 현지사정 등으로 조기에 출국할 경우에는 연수개시일을 재단에서 따로 정함

#### 3)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일시귀국과 조기귀국일자를 합하여 연간 총15일을 초과할 경우 연수비를 다음에 의거 환수함

- 일할 반납조치 : 일시귀국과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일할반납토록 함
- 전액 회수 :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파견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수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나. 박사후 국내연수

구 분	3개월 미만 중단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중단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중단시	9개월 이상 중단시
지 원 비 환수내용	①연수비 잔액 ②기관지원금 전액 ③보험부담금 잔액	①연수비 잔액 ②기관지원금 50% ③보험부담금 잔액	①연수비 잔액 ②기관지원금 반납 없음 ③보험부담금 잔액	○ 계속 연구가 가능한 경우 연수비 잔액을 연구비로 지급함 ※연수결과보고서 및 연수결과발표물 제출 의무화 ○ 계속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연수비 잔액을 반납 받고 중단일까지의 연수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 - 연수기관지원금 반납 없음 -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의무사항	○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중단시: 대학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의 학술연구비 수혜기관으로 취업한 후 연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잔액을 임용기관으로 송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토록 하고 당초 연수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종결토록 함 (연수결과보고서 및 연수결과발표물 제출 의무화) 단, 학술연구비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 및 국외에 취업 시는 중단일까지의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후 종료

## 다. 학술연구교수

구 분	6개월 미만 중단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중단시	1년 이상 2년 미만 중단시	2년 이상 3년 미만 중단시
지 원 비 환수내용	①연구활동비 잔액 ②연구비 잔액 ③기관지원금 잔액 ④보험부담금 잔액	“ 좌동 ”	“ 좌동 ”	“ 좌동 ”
의무사항	○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학술지 게재 논문 1편	○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 연구 중단에 따른 연구지원비 반납은 실제 퇴직한 월의 날까지의 일할계산(퇴직한 해당 월의 일수로 산출)하여 잔액을 환수함.

## VII. 간접연구비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VIII. 기타사항

- 본 사업은 간접연구비 지원대상 이 아님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수가 곤란한 경우 및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하고, 연수중인 경우에는 연수비 지급을 중단, 소환, 배상 조치함
- 연수지원 신청시 제출한 당초 연수계획의 내용(연수과제, 연수기관, 연수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2007년 박사학위취득예정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규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0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4번지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사업관련문의 : 신청 연구과제의 학문분야(재단 연구분야분류표 기준)에 맞추어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인문학분야 : 인문학지원팀  
Tel (02) 3460-5572 ~ 7 FAX(02) 3460-5589
  - 사회과학분야 : 사회과학지원팀  
Tel (02) 3460-5582 ~ 7 FAX(02) 3460-5579
  - 예술,체육,복합: 복합학지원팀  
Tel (02) 3460-5764 ~ 6 FAX(02) 3460-5769
  - 자연과학분야 : 자연과학지원팀  
Tel (02) 3460-5607 ~ 3 FAX(02) 3460-5619
  - 공학분야 : 공학지원팀  
Tel (02) 3460-5612 ~ 4,6 FAX(02) 3460-5629
  - 의약학,농수해: 생명과학지원팀 FAX(02) 3460-5619  
Tel (02) 3460-5624 ~ 5
- 전산관련문의(온라인 신청 등) : 학술정보팀
- Tel (02) 3460-5541-5548

<붙임1> 2007년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학술연구교수)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급연구원 수당(학술연구교수 본인 인건비)</li> </ul>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 * 신청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li> <li>*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li> </ul>	-학사과정생 : 월 40만원 이내 / 1인당 -석사과정생 :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과정생 : 월 120만원 이내 / 1인당
직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li> </ul>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li> </ul>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비</li> </ul>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비 및 수수료</li> </ul>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정보활동비</li> </ul>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 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지원 ※ 윤문교열비가 필요할 경우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구비</li> </ul>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홍보비</li> </ul>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지원금: 300만원</li> <li>· 보험부담금 : 300만원</li> </ul>	* 신청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됨

- ※ 여비의 산정은 소속 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함
- ※ 연구기기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
- ※ 학술연구교수의 직접비(연구비) 기본 지원액이 600만원이므로, 상기 직접비 항목에 따라 반드시 600만원에 맞추어 신청함. 단, 6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됨
- ※ 추후 실행예산서 작성 또는 전용시에는 당초 없었던 세부항목의 신설을 불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람
- ※ 문헌구입비는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에서 신청함
- ※ 다년과제를 신청할 경우,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내역을 신청연도별로 입력하여야 함

<붙임2>

< 양 식 1 >

# 연 수 계 획 서

사 업 명	2007년 박사후국외연수( ) 2007년 박사후국내연수( ) ※ 해당사업에 ○ 표하십시오		
연수과제명	국 문		
	영 문		
연수국가 (국외에 한함)		연수대학(기관)	
연수기관 지도교수			
연수기간	※ 박사후국외연수 예시 : 1년 (2007. 8. 1. - 2008. 7. 31) ※ 박사후국내연수 예시 : 1년 (2007. 9. 1. - 2008. 8. 31)		

※ 아래의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총 15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함

1. 연수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수의 내용, 방법, 범위
3. 연수기관의 우수성, 연수과제와의 적정성
4. 연수자의 연수능력
5. 연수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6. 연수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참고문헌(선행연구의 검토 포함)

##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2007년 박사후 국내·외 연수)

▣ 본인 대표업적으로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또는 선택 하고자 하는 대표업적 1편의 다음 사항을 작성하십시오.

업적 형태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
논문(저·역서,특허)제목	
학술지(저·역서/특허)명	
학술지 구분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SCI&SCIE급 학술지 ( ) 국내기타학술지 ( ) 국외기타학술지 ( )
발행연도(권/호 포함)	
발행(출판)기관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연구업적 저자 구분	주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 )
역할구분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 ( )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당초 논문초록 내용 그 대로 입력 가능)

##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박사학위 논문 제목	
※ 아래 해당사항(*)은 동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람	
* 학술지 (저·역서/특허)명	
* 학술지 구분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SCI&SCIE급 학술지( ) 국내기타학술지( ), 국외기타학술지( )
* 발행연도(권/호 포함)	
* 발행(출판)기관	
*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당초 논문초록 내용 그 대로 입력 가능)



<양식 5>

# 연수기관 학과장 추천서

(박사후 국내연수에 한함)

## ■ 추천의견

신 청 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
	영문)		
연 수 과 제 명			
추천의견 :			

상기자는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 재단에서 수행하는 박사후연수과정지원 사업의 신청에 추천하며, 연수자가 연수를 종료할 때까지 소속 학과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7년      월      일

추천인(학과장)

소속기관 :

소속학과 :

직위 :

성명 :

(인)

※ 추천인은 신청자의 취업상태 등을 파악하여 연수 개시시 인건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을 유념하여 추천하여야 함 (이건비 이중 수혜불가)

(붙임3)

<양식 1>

## 2007년도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 ( 000연구소)

- 해당 기관에서 학술연구교수 후보 1인당 1부씩 작성
- 신청요강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분량은 자유롭게 기술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대학 및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명시를 절대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구소명은 명시바랍니다.

1. 해당연구소명 : ○○연구소 (※대학명은 명시하지 않고 연구소명만 명시함)

### 2. 연구교수제 운영의 필요성

가. 학술연구교수의 인력 필요성 등

- 연구소 강의 및 연구와 연계한 학술연구교수의 필요성

### 3.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2007년 ~ 2009년)

가.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연구소의 공동연구 참여 등 설명)

나. 기타 운영방안

※ 각 항목은 연도별 세부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학술연구교수 처우계획

가. 동 학술연구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한 계획

※ “처우”는 재단 지원비 외에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의미합니다.

### 5. 2010년 이후 자체 재원에 의한 채용 및 운영계획

※ 대학에서 학술연구교수제 정착을 위한 계획(학술연구교수 운용을 통한 연구소 육성방안, 학술연구교수 임용을 위한 자체 재원 충당 방안 등 포함)을 기술하십시오.



<양식 3>

2007년도 학술연구교수 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I.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

III.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

IV.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V. 참고문헌 .....

VI. 박사학위 논문 요약문 .....

VII.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

VIII. 소명서(해당자) .....

- 신청요강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아래 순서대로 항목별 2~4매씩 총 10매~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계획의 기술이 필요한 항목은 연차별로 작성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대학 및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절대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주제 및 방법의 창의성 및 독창성, 학문적 가치 및 학문의 균형발전, 학문적 파급효과 및 교육과의 연관성 등)

## 2.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연구 내용의 필요 충분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적적성 등)

※ 연차별 연구할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요망

## 3.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학문적 가치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한 연구배경 등)

##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논문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과제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및 교육에의 활용정도 등)

## 5. 참고문헌

(선행연구 등과 연계한 참고문헌 등)

<양식 4>

2007년도 학술연구교수 박사학위 논문 요약문

박사학위	국 문	
논문제목	영 문	
학위취득일	년	월 일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당초 논문초록 내용 그 대로 입력 가능)

<양식 5>

**2007년도 학술연구교수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 ※ 발표 논문의 초록을 입력하되, 초록이 없을 경우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 기재
- ※ 인문·사회·예술·체육 분야의 경우는 2편, 기초과학분야의 경우 3편을 각각 작성함 (단독 저·역서는 연구실적 2편, 공동 저·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하는 대표업적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함

업적형태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발표년월일	년    월    일	참여구분	단독(    ) / 공동(    ) ※공동일 경우 (    )인 참여
게재지 (발행처)			
국문제목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당초 논문초록 내용 그 대로 입력 가능)